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07

발의연월일: 2024. 8. 26.

발 의 자:정성호·황 희·안규백

김영진 • 정준호 • 김윤덕

최기상 · 소병훈 · 차지호

박희승 • 윤후덕 • 이연희

임미애 · 김남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음.

그런데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후 그 내역을 그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만 두고 있어 정부의 부적절한 예비비 편성과 집행을 적절히 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국회 중간보고나 자료제출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서 예비비가 총액으로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나, 이는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을 의무를 규정한 것뿐이지 예비비가 기밀성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님.

이에 예비비의 사용요건으로 예측불가능성과 시급성, 보충성,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대통령이 승인하여 확정한 경우 그 계획을 대통령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본문 중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와 각 요건에 대한 소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불가능했을 것
- 2. 해당 회계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 3.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것
- 4.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그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의 국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②
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
<u>이유</u>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우로서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한 때에는 그 이유와 각 요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u>에 대한 소명</u>
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	
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	
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	
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	
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	
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u><신 설></u>	1.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
	할 때 예측이 불가능했을 것
<u><신 설></u>	2. 해당 회계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u><신 설></u>	3.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

	당하기 어려울 것
<u> <신 설></u>	4.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
	<u>능할 것</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
	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그 승
	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u>한다.</u>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